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주찬식 의원(찬성자 11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073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3. 18.

라. 회부일자 : 2016. 3. 23.

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하는 규정과 중복 규정 등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관련 상위법(「하수도법 시행령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) 제·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 정비함(안 제3조, 안 제34조제1항제5호, 안 제39조제1항제1호).

나.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
다.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전부개정시(2008. 7. 30.)

정비 누락된 조항을 정비함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.

라.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원안참조
- 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(5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「하수도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관련법(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)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■ 주요 조문별 검토

가. 상위법 제·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(안 제3조, 안 제34조제1항제5호, 안 제39조제1항제1호)

- 안 제3조는 ‘공공하수관로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’과 관련하여 「하수도법」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¹⁾(2011.4.5.)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,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.([표 1] 참조)

[표 1] 안 제3조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법 제15조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 시행규칙 ”이라 한다.)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(하수관거를 말한다)로부터 30m이내 로 한다.	제3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 로 한다.

- 따라서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체계를 정비하고, 현행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인 ‘공공하수도로부터 30m이내’를 ‘공

1) **개정 전** 「하수도법」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, 배수구역(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,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
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7조(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)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,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개정 후 「하수도법」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, 배수구역(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,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5., 2013.7.16.>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,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1.4.5., 2013.7.16.>

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'로 변경하려는 것은 조례 집행의 명확성을 기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
- 안 제34조제1항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수급권자에 대한 관련법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)이 개정²⁾(2014.12.30.)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([표 2] 참조)

[표 2] 안 제34조제1항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1. ~ 4. (생략)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. ~ 9. (생략)	제34조(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. ~ 9. (현행과 같음)

- 다음으로, 안 제39조제1항 중 제1호의 삭제는 현행 ‘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, 조사’ 규정이 2012.5.22일 새로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나. 기타 정비사항

- 현행 조례 제8조와 제9조는 ‘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’에 관한 규정으로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7조(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

2)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해 인용하고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가 삭제되고 제14조의2가 신설됨.

등)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- 또한, ‘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의 삭제는, 2008년 7월 30일 동 조례 전부개정시 이미 삭제된 관련 조문과 함께 삭제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존치되고 있던 것을 금회 삭제하려는 것임.
- 이는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.
- 기타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춰 맞춤법과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([표 3] 참조)

[표 3]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

현 행	개 정 안	비고
‘~에 의하여’	‘~를 이용하여’	쉬운말로 정비
‘익일’	‘다음 날로’	한자어 순화
‘부과하며,,’	‘부과하며,’	오기 수정
‘900mm이상’	‘900mm 이상’	맞춤법 정비
‘별표1’	‘별표 1’	
‘한다.다만,’	‘한다. 다만,’	
‘준공검사신청서’	‘준공검사 신청서’	
‘인·허가시’	‘인·허가 시’	